

※ [별첨1] 전형단계별 우대(가점부여 등) 기준

전형단계	우대 기준	비고
서류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유공자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*에 따라 우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 10점 부여, 5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 5점 부여(국가유공자 분야의 경우 10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5점 부여) * 「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• 장애인 : 가점 5점(장애인 분야 가점 적용 제외) • 재단 근무 경력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9.06.26. 이후 한국연구재단 근무기간(고용형태 무관)이 지원 마감일까지 1년 이상인 자 : 가점 3점 • 재단 체험형 인턴 근무 경력자 : 유형별 차등 가점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4년~2015년 한국연구재단 체험형 인턴 경력자로서 당초 근로계약 기간 동안 만근한 자 : 가점 2점 - 2016년~2019년 한국연구재단 체험형 인턴 경력자로서 당초 근로계약 기간 동안 만근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개월 근무 자 : 가점 2점 · 5개월 근무 자 : 가점 3점 (우수 인턴 지정자 가점 2점 추가 부여) • 비수도권 지역인재 : 가점 3점 (※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 / 세부기준 참조) • 저소득층 : 가점 3점 (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) • 2017.7.20. 기준 재단에 사무원(파견직)으로 근무한 자 : 서류전형 면제 	<p>가점은 최대 15점까지 부여 / 단, 재단 근무, 체험형 인턴 경력자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, 저소득층 가점은 중복시에도 종합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</p>
필기 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유공자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*에 따라 우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 10점 부여, 5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 5점 부여(국가유공자 분야의 경우 10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5점 부여) * 서류전형과 동일 근거법령 적용 • 장애인 : 가점 5점(장애인 분야 가점 적용 제외) • 2017.07.20. 기준 재단에 사무원(파견직)으로 근무한 자 : 가점 5점 	<p>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</p>
면접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유공자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*에 따라 우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 10점 부여, 5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 5점 부여(국가유공자 분야의 경우 10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5점 부여) * 서류전형과 동일 근거법령 적용 • 장애인 : 가점 5점(장애인 분야 가점 적용 제외) 	<p>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</p>